

# 외국인 및 재외국민학생 학사에 관한 규정(3-5-14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.) 학칙 제15장에 의한 외국인 학생 및 재외국민학생, 외국인교환학생의 학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생의 구분) 학생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외국인학생은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교의 입학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.
2. 재외국민학생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서 본 대학교에 입학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.
3. 외국인교환학생은 본 대학교와 자매결연 협정을 맺은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으로 본 대학교에 파견되어 수학하는 학생을 말한다.

제3조(신입학)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서 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외국인 학생은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 소재 학교(외국인학교)를 불문하고 초·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(국내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) 자. 단, 이중국적자 및 해외 검정고시(미국·캐나다의 GED, 중국의 자학고시 등)는 불인정(개정 2017.01.26.)
2. 재외국민 학생은 우리나라 초·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(12년)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국내 초·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(개정 2017.01.26.)

제4조(외국인 학생 편입학) 외국인 학생으로서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 
(개정 2017.01.26.)

1.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면서 우리나라 초·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또는 12년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자(신설 2017.01.26.)
2. 2~3학년 일반편입학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내·외 4년제 및 2년제 대학에 입학한 자(신설 2017.01.26.)
3.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(신설 2017.01.26.)

제4조의2(재외국민 학생 편입학) 재외국민 학생으로서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신설 2017.01.26.)

1. 외국에서 2년 이상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으로서 외국 국적 취득 후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2년 이상 이수자, 단, 복수국적자 제외, 부모의 국적 및 재

직기간은 관계하지 않음

2. 2~3학년도 일반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내·외 4년제 및 2년제 대학에 입학한 자

3.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

제5조(관리위원회구성) 외국인학생 및 재외국민학생, 외국인교환학생의 학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학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, 이는 교무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6조(한국어 연수) ① 외국인학생 및 재외국민학생, 외국인교환학생은 원만한 학업 성취를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미만 성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하거나 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국어 연수를 받도록 한다. 단, 그 기간은 24개월 이내로 한다.(개정 2017.01.26.)

② 학부, 대학원 재학 중인 학생은 한국어 연수를 실시할 수 없다.(개정 2017.01.26.)

③ 한국어 연수를 위하여 휴학할 수 있으며 휴학은 재학기간 중 1회(1년 이내)로 하고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④ 휴학 중 취득한 학점은 정규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⑤ 입학 당시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.(개정 2017.01.26.)

제6조의 2 (신설 2006.01.25.)(삭제 2017.01.26.)

제7조(학생지도) ① 외국인학생에게는 전담교수를 지정하여 학사관리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게 한다.

② 전담교수의 지정 및 행정사항은 본 대학교 전공 지도교수로 담당하게 한다.

제8조(기타)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학칙에 따른다.(개정 2017.01.26.)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